

울산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나101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권

피고, 피항소인 1. C

2. 망 B의 소송수계인

가. Y

나. Z

다. AA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균

변 론 종 결 2022. 3. 24.

판 결 선 고 2022. 4. 21.

제1 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20가단10330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양산시 D 도로 269㎡ 중 피고 Y는 9/28 지분, 피고 Z, AA는 각

6/28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1/4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9. 8. 29. 접수 제368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피고 B”을 “망 B”으로, 각 “피고들의 부”를 “망 B와 피고 C의 부”로 각 고치고, 제3면 제8행 다음에 “아. 망 B은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20. 11. 22.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배우자인 피고 Y와 자녀인 피고 Z, AA가 공동상속인으로 당심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를 추가하고, 제3면 제10행의 “증인 T”을 “제1심 증인 T”으로,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원고의 부 I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지적소관청인 양산시 웅상출장소의 지적담당공무원 T이 2019. 8. 29. 피고들 측의 민원 전화를 받고서 바로 직권으로 삭제하였으며,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인 원고의 부 I 내지 그 상속인들에게 이를 통지하지도 않았다. 이는 담당공무원이 피고들과 결탁하여 편의를 봐준 불공정한 행위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88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위법무효한 조치이므로, 토지대장상 원고의 부 I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G는 원고의 부이므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G가 망 B 및 피고 C의 부임을 전제로 한 망 B 및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이 주민등록번호가 위법하게 삭제된 토지대장과 피고 C의 날인도 되어있지 않은 등기신청 위임장을 첨부하여 마쳐진 등기로서,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따라 각하되었어야 함에도 그대로 등기된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공간정보관리법 제88조 제4항은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T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여 소유자인 G의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사실을 확인한 후 이와 일치하도록 토지대장상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를 직권으로 삭제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행위로서 위법한 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90조 본문은 “제64조 제2항 단서, 제66조 제2항, 제74조, 제82조 제2항, 제84조 제2항, 제85조 제2항, 제86조 제2항,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촉탁을 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적소관청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를 열거하였는데, 위 제88조 제4항에 따른 직권 정리는 통지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직권 정리의 경우 지적소관청에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T이 원고의 부 I 내지 상속인들에게 위 직권삭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도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서 원고의 부 I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제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토지대장에 원고의 부 I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부 I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G와 동일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AB, AC, AD의 각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으나, 위 사실확인서는 그 내용이나 형식에 비추어 원고가 작성하여 온 서면에 원고와 친척 관계에 있는 작성명의인들이 날인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모두 원고 주장의 사정들을 작성명의인들이 어린 시절 주변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부 1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에 있어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목, 판사 임미경, 판사 김용희